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

1. 소득세법 개정 내용

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(소득법 §12)

<개정이유>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

종 전	개 정
□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·육아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비과세 ○ 육아휴직 급여·수당 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○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<추 가>	□ 비과세 대상 확대 ○ (좌 동) ○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
<적용시기> 2020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2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(소득법 §59의2)

<개정이유>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

종 전	개 정
□ 자녀세액공제 대상 ○ 7세 이상의 자녀 -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	□ 대상 조정 ○ (좌 동) - <삭 제>

<적용시기> 2020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3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조정(소득령 §79)

<개정이유>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

종 전	개 정
□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○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(①→②)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	□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○ (좌 동)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*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

<적용시기> 2020.2.11.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4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(소득규칙 §58)

<개정이유> 근로자 세액공제 신청방법 개선

종 전	개 정
□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* *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○ 안경·콘택트렌즈 구입비용, 보청기, 장애인보장구, 의료기기 구입·임차비용 <추 가>	□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○ 산후조리원 비용

<적용시기> 2020.3.13.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5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(소득법 §165, §174의3)

<개정이유>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

종 전	개 정
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○ (대상) 소득공제·세액공제*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* 의료비, 보험료, 연금계좌 납입액 등 ※ (절차)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→ 자료 집중기관 → 국세청장 <추 가> □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○ (대상) 보험회사 등 보험·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	□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○ (좌 동) - 보험회사 등 보험·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<삭 제>

<적용시기> 2021.1.1.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

6 '20.3~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(조특법 §126의2)

<개정이유> 선결제를 통한 소비 활성화 지원

종 전(20.3.23.)	개 정
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○ (공제대상)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 ○ (공제율) 3~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·대상에 따라 30~80% (구분 / 공제율: 신용카드 30%; 현금영수증·체크카드 등 60%; 전통시장·대중교통 80%) * '20년 1,2,7~12월 사용분은 15~40% 적용 ○ (공제한도) 급여수준별로 200~300만원 ○ (추가 공제한도)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(항목 / 한도 추가: 전통시장 100만원; 대중교통 100만원;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100만원) ○ (적용기한) '22.12.31.	□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○ (좌 동) ○ 4~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80%로 상향 (구분 / 3월 / 4~7월 / 8~12월: 신용카드 30% / 80% / 15%; 현금영수증 등 60% / 80% / 30%; 전통시장 등 80% / 80% / 40%) ○ (좌 동)

<적용시기> 2020.5.19.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7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(조특법 §95의2, §122의3)

<개정이유>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

종 전	개 정
□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	□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
○ (대상자)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 이하)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, 성실신고확인대상자	○ (좌 동)
○ (공제율) - 총급여액 5,500만 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000만 원 이하자) : 월세액의 12% - 총급여액 7,000만 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6,000만 원이하자) : 월세액의 10%	- 4,000만 원 → 4,500만 원 - (좌 동)
○ (월세액 한도) 750만 원	○ (좌 동)

<적용시기> 2021.1.1.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

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던 ▲**공공임대 주택 월세액** ▲**안경구입비 자료**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와는 별개로 조회되던 ▲**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** 20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▲**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**를 일괄 수집해 제공합니다.

	추가 수집·제공 자료	수집처
월세액	공공임대주택사업자 월세액	토지주택공사 등
의료비	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안경구입비	신용카드사 등
	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	보험회사 등
기부금	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	행정안전부 등